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4. 10. 17 선고 2024가단1016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조합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2024. 8. 22.

판결 선고2024. 10. 17.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2023. 7. 6. 체결된 증여계약을 31,444,4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1,444,434원 및 그중 30,526,603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4. D과 대출금액 6,200만 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3. 11. 4., 이자율 연 8.33%(변동금리적용), 지연배상금 연 11.33%(변동금리적용)로 정한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금액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후 2022. 8. 3.까지 그 기한을 연기하였다.

나. 2024. 2. 20. 기준 D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원금 30,526,603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917,831원 합계 31,444,434원이다.

다. D은 2023. 7. 6. 피고 명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이체하여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라. 주문 기재 증여계약 체결 무렵 D의 재산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적극재산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 (낙찰가 206,500,000원)

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시가 2,649,258원, 선순위 가등기권자 있음)

2) 소극재산 가)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금 30,526,603원

나) E에 대한 채무 원금 55,120,000원

다) F에 대한 채무 원금 26,280,780원

라) G에 대한 채무 원금 39,375,919원

마) H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 원금 10,515,548원

바) I저축은행에 대한 채무 30,780,000원

사) J조합에 대한 채무 152,030,158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주문 기재 증여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하였기에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1) D이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와 주문 기재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원고 등 자신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D과 피고의 악의는 모두 추정된다.

다. 취소 및 원상회복

피고·D 사이에 2023. 7. 6.경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31,444,434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수익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31,444,434원 및 그중 30,526,603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권순향

별지